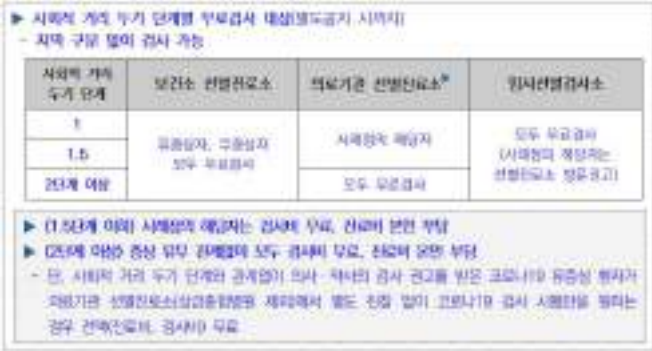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법무지침팀〉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i	○ 법적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다목 제1항급업법 신종감염병중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 대응 방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 작성 - 향후 발병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관리, 검역기, 대응절차 등 변경 ○ 본 지침에서 규정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함	[일러두기] ○ 법적 근거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라 "코로나19"는 해당 감염병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제1항급업법 신종감염병중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 대응방향 관련 -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발병 상황, 역학조사 결과 및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사례 정의, 검역기,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 예시 「자가격리 지침」, 「방역수칙」, 「코로나19 대응 상황관리 지침」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법령명 약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법무지침팀〉 일러두기 법적 근거 및 대응방향 관련 사항 안내 다른 지침과의 관계 명확화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목차	V. 역학조사 1.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 관련 역할 및 책임 2. 역학조사 실무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4.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5.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6. 역학조사 정보관리 VI. 대응방안 1. 개요 2. 의사환자 대응방안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4. 확진환자 대응방안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6. 방역조치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V. 확진환자 대응방안 1. 확진환자 관리 2. 확진환자 격리해제 3. 역학조사 3-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3-2.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3-4.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3-5. 역학조사 정보관리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중요도 상승) 5.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신설) 6. 방역조치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VI.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1. 개요 2. 의사환자 대응 방안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법무지침팀〉 역학조사와 대응방안의 큰 목차를 확진환자 대응방안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으로 목차 정리
II.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9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 ◆ 본 사례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는 무관하게 적용됨	〈환자관리팀〉 사례 정의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의 관계 명시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9	1. 사례 정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 까지) ▶ 수정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055(2021.4.8.)호	1. ----- 	〈진단검사운영팀/총괄조정팀〉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강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기관별 검사 무료 대상 안내 명확화
1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처 검사 권고(조사대상 위증상자(또 신고)) ㉠ 가족(동거인) 또는 동거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자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일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유행실태조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처 검사 권고(유니트로 신고) ㉠ 가족(동거인) 또는 동거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자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일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유행실태조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기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진단총괄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 관련하여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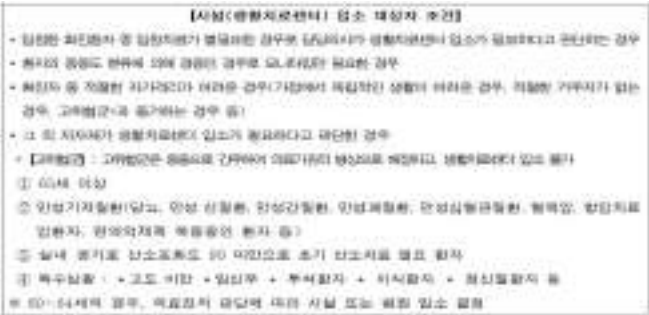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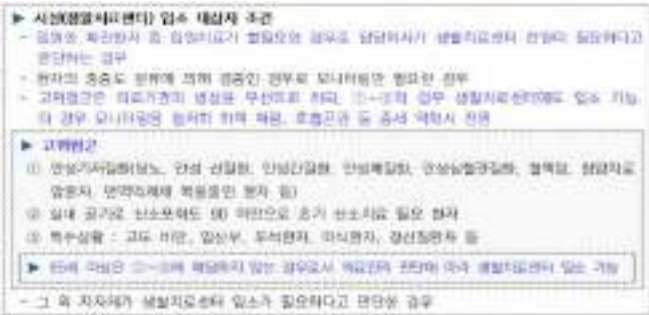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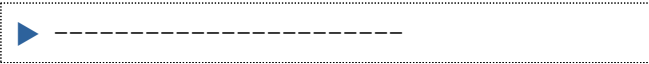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3	3.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나. 발생 신고 등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감염병 웹신고를 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1」 및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함께 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폐렴 발현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4: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3. ----- 나. ----- ○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 “환자분류” 중 “의사환자”에 체크하고, 또한 “비고(특이사항)”에도 “조사대상 유증상자”임을 추가 입력하고, 신고서 내용 이외 기타 주요사항도 상세하게 입력토록 함 ▶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란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1” 및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함께 입력 ▶ 입력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폐렴 발현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4: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진단총괄팀〉 자구 수정 및 자가검사 양성인 경우 입력 방법 안내
14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는 최초 인지 병원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추정)사망원인과 사망일시 등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즉시 유선 보고	5. ----- ○ ----- ----- 인적사항, 사망일시 및 (추정)사망원인 ----- -----	〈환자관리팀〉 문구 수정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4	○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신설)	○ (의료기관/보건소) ----- ----- ----- -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환자관리팀〉 발생, 사망 신고관련 상세설명 추가
14			〈환자관리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화면 업데이트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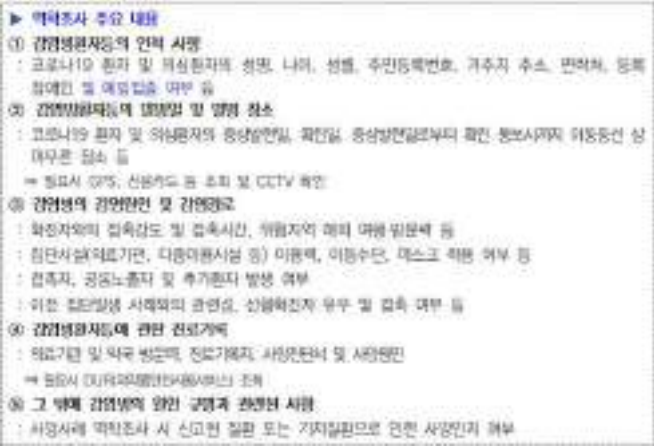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7	○ 경증 확진자의 경우 〈 공항 〉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검역소는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등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국립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는 중수본 환자 병상관리팀 (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항만 〉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검역소는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2) -----(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 (-----)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임시생활 시설은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확충팀----- ○ (-----)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3) 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 시설은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격리관리팀〉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역할 안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입소 관련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에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으로 업무 소관 변경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외국인) 검역소는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 -----	
18	나) 병상배정 통보 ○ (시·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후 검역소에 결과 통보	나) ----- ○ ----- -----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또는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격리관리팀〉 병상배정 관련 결과 통보 시설 추가
21	○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3일째(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1회 실시	○ ----- 12~13일 -----	〈공통〉 관할 지자체 검사 인력 등 종합적인 여건에 따른 검사 지연을 고려하여 검사일 수정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V. 역학조사 → 확진환자 대응방안			
25	가. 확진환자 관리 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1. ----- 다.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변경 안내 적용 (‘20.12.18, 중수본-33428호)
26	①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라) 시설(생활치료센터) ○ 전원, 퇴원, 사망, 격리해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당일 마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퇴소일까지는 중수본에서 발급	1) ----- 라) ----- ○ -----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자구 수정 및 소관 삭제
27	②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 가능한 관할 지역 내 가용할 병상이 부족 시 적용	2)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자구 수정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28	다) 시설(생활치료센터) ○ 전원, 퇴원, 사망, 격리해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퇴소일까지는 중수본에서 발급	다) ----- ○ ----- ----- ○ -----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자구 수정 및 소관 확인
30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참고 ○ ----- ----- ----- ○ ----- -----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기준 적용에 있어 현장의료진의 판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강화하기 위해 문구 추가
30	2)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신설)	다.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 퇴원(소) 시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전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시: 각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전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외 장소에서 격리해제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전달	〈환자관리팀〉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두 격리해제자에 대한 안내문 전달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31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단계별 대응 주체 <table><tr><th>구분</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r><tr><td>입원</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r><tr><td>전원</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r><tr><td>시설</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r></table>	구분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전원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시설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2. -----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단계별 대응 주체] <table><tr><th>구분</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h>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h></tr><tr><td>입원</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r><tr><td>전원</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r><tr><td>시설</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d>입원·전원·시설 입소 시</td></tr></table>	구분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전원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시설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환자관리팀〉 지침 구성에 맞춰 위치 이동
구분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전원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시설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구분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전원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시설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32	2. 역학조사 실무 역학조사 대응절차	3. 역학조사 [대응절차]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대응 절차 중 사례구분, 조사대상 등 추가																																																																																
33	- 기관별 역할 <table><tr><th>구분</th><th>중앙·광역·지방보건청</th><th>시·도</th><th>시·군·구</th><th>기타 협력기관</th></tr><tr><td>역할</td><td>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td><td>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td><td>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td><td>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td></tr><tr><td>담당·협력</td><td>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td><td>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td><td>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td><td>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td></tr></table>	구분	중앙·광역·지방보건청	시·도	시·군·구	기타 협력기관	역할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담당·협력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주체별 역학조사 관련 역할 및 책임] <table><tr><th>구분</th><th>중앙·광역·지방보건청</th><th>시·도</th><th>시·군·구</th><th>기타 협력기관</th></tr><tr><td>역할</td><td>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td><td>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td><td>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td><td>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td></tr><tr><td>담당·협력</td><td>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td><td>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td><td>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td><td>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td></tr></table>	구분	중앙·광역·지방보건청	시·도	시·군·구	기타 협력기관	역할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담당·협력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역학조사팀〉 기관별 역할 중 담당인력에 방역관 추가																																																		
구분	중앙·광역·지방보건청	시·도	시·군·구	기타 협력기관																																																																															
역할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담당·협력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구분	중앙·광역·지방보건청	시·도	시·군·구	기타 협력기관																																																																															
역할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지휘·통제·지원 및 조사·연구·분석, 지역·병상·의료·연구·조사, 방역·수칙·준수·관리																																																																															
담당·협력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보건·예방·역학·조사·팀, 방역·수칙·준수·관리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35	2. 역학조사 실무 ○ 역학조사 방법 - 환경조사(시설, 업무형태 등) 및 검체 채취,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	1. 개요 라. 방법 및 내용 - ----- 환경검체 ----- - -----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방법 중 인체검체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검체로 명확하게 지구 수정
35	○ 역학조사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및 기초역학조사서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 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록장애인 여부 등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과정 중 수집할 수 있는 인적 사항에 예방접종 내용 추가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36	(신설)	마. 공항 및 항만 입국 검역대응 단계에서의 확진환자 역학조사·등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응지침」 참조 ○ (확진자 발생 보고)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권역센터 감염병대응과)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 ▶ 건강상태질문서, 기초역학조사서 첨부 ○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가 역학조사 실시 ○ (확진자 역학조사)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확진환자의 발생을 인지(통보받은) 후, 이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서식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를 최초 인지 후 각각 24시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위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권역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역학조사팀〉 검역대응 단계 중 검역소, 보건소 업무 명시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1	가. 사전 준비 ○ 접촉자에 대한 긴급조치 및 준비사항 전달 - 집단시설의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일반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고,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 위한 행정조치 시행 고지(공문, 사전고지문 등)	가. ----- 2) ----- ○ 사업장 및 ----- ----- -----	〈역학조사팀〉 접촉자 관련 조치 대상 시설에 사업장 추가
41	나. 현장 대응 ○ 역학조사 - (사전고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고지 *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역학조사, 제76조의2 개인정보 제공 요청	나. ----- 3) ----- ○ (-----) 「감염병예방법」▶ ----- ----- ▶ 관련 조문 : -----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등	〈역학조사팀〉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자구 수정
41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 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밀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 - ----- ⇒ ----- ----- - ----- ----- ⇒ -----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 ----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1	(시설·환경 관리) 환자 거주 및 활동(직장, 학교, 병원 등) 장소 등 시설 관리 * 관련 : 감염병예방법(제47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 (신설)	○ (-----) -----(사업장, 직장, 학교, 병원 등) ----- ▶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 명령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제시된 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재개시간의 불필요한 연장 지양	〈역학조사팀〉 시설 관리 대상에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파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명문화 〈역학조사팀/법무지침팀〉 소독 후 시설 재개시간 불필요한 연장 지양 안내 및 정리
42	- (접촉자 조사) 노출 장소, 시기별 접촉자 조사 및 분류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증상 발생일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출장소 및 접촉자 조사 범위 재설정 (신설)	○ (-----) ----- - ----- - ----- - 협력업체 및 인적 교류 현황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접촉자 조사 범위 설정	〈역학조사팀〉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 관련 정보 수집 수단 추가 (협력업체 및 인적 교류 현황)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2	다. 조치 사항 ○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법 결정 - 시·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이 현장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노출 상황, 시설·환경, 운영 인력에 대해 평가한 뒤 관리 계획 수립 ·(위험도 평가) 노출기간, 범위, 강도 ·(접촉자 평가) 연령, 기저질환, 독립적인 자립 생활 능력 등 ·(시설 평가) 시설 내 확진환자 및 접촉자 분산 배치를 위한 가용 공간 ·(시설 운영능력)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인력, 감염관리 수준	다. ----- 1) ----- - ----- -----운영 인력 등에 ----- ----- ▶ (-----) -----, 사업장 내 숙소사 등 집단시설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시·도 다문화센터(통역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 및 다국어 번역본(기초/심층 역학조사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위험도평가 및 역학조사 수행 ▶ (-----) -----, 협력업체 및 인적교류 현황 등 ▶ (-----) ----- ▶ (-----) -----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 관련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부분 현행화
42	- 모니터링 체계 및 시설관리 방안 마련 * 의료기관 내·외 접촉자 관리, 환자·보호자·직원 등 관리, 방문객 관리, 환경소독, 감염관리 개선, 지역사회 확산 방지 전략 등 (신설)	○ ----- ▶ 집단시설 및 ----- ----- ▶ 협력업체 및 업종별 관할 관리감독 기관 등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 등	〈역학조사팀〉 모니터링 체계 및 시설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도 포함하여 논의하도록 명확히 함 협조체계 구축 대상 명문화
42 ~ 43	- 필요시 권역 질병대응센터/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관리방법* 논의하여 결정 * 응급실·병동(입원실)·외래·검사실 등 노출된 의료기관 폐쇄여부·범위(단위)·조치사항 등 결정	○ -----권역센터/----- 및 해당 시군구, 시설장과 ----- ▶ ----- -----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5	- 집단시설 폐쇄 결정 ·전파 위험이 높고, 격리 범위가 넓을 경우 시설관리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폐쇄(전체/외래, 입원 등 일부) 여부 결정 (신설)	다) ----- ○ -----, 범위 및 기간 결정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내 감염 및 전파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폐쇄 기간 결정(소독명령과 폐쇄명령 구분) ▶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 명령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제시된 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재개시간의 불필요한 연장 지양	〈역학조사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폐쇄 조치 근거 및 구분을 통해 혼선 방지 및 불필요한 폐쇄 조치 제한 안내
47	라. 상황 보고 ○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발생 사례에 대한 시·도 즉각대응팀 조사·관리 주요 결과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질병 관리청에 보고(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 * 전산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	라. 상황 보고 ○ ----- ----- ----- ▶ 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 ▶ 전산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추후 통보 예정)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47

쪽

현행(9-5-1판)

마. 협력 업무

○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반 주요조치 사항

구분	역할
시설·환경 관리	• 이동제한, 특정장소 폐쇄, 환경 소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접촉자 관리	• 격리 대상자 생활지원 및 능동모니터링 • 유증상자 발생시 선별 진료소 이송
폐기물 관리	• 환자사용 린넨, 의료도구, 감염성 폐기물 등 * 폐기물 처리시 신체적인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
기타	• 유관기관(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협조 체계 유지

10판 개정

마.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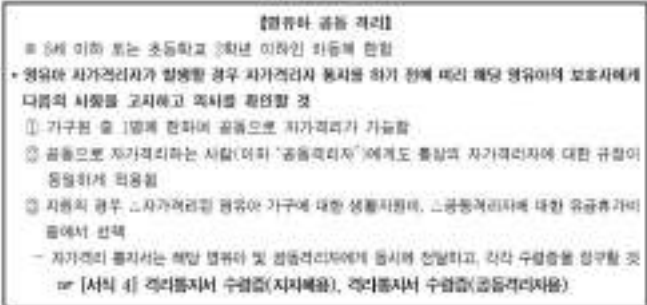
구분	역할
시설·환경 관리	▶ ----- * -----
접촉자 관리	▶ ----- ▶ -----
폐기물 관리	▶ -----감염성 폐기물(거즈, 일회용 개인보호구 등) -- * ----- 하고 환자가 사용한 린넨은 세탁 후 사용 가능
기타	▶ ----- 의료기관, 고용노동부 지방청,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 --

개정사유

〈역학조사팀〉

환자가 사용한 일회용 의료도구 및 감염성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이 가능한 린넨 등은 폐기대상에서 제외하여 손실보상심의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 추가

협조 요청 유관기관 명문화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0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나. 자가격리 절차 및 방법 2) 자가격리 방법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사위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1판 ('20.6.24), 보건복지부]을 적용 	3-3. ----- 나. 자가격리 절차 다. 자가격리 방법 ○ ----- ----- ----- ----- 	〈격리관리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서 공동격리 대상인 장애인, 영유아인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공동 격리사항 명시 공동격리자 지원에 대한 명확화
51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문잔교,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유지 ○ 임의적으로 자가격리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관측 실험 또는 치료 가능하고 재진환자가 발생할 위험에 대해 면담하여 응급 처치를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재래 치료 가능 ○ 폐스, 전파무면 등으로 환자 지향적이며 치명적 전염. + 환자-역사 형식하여 약 수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제1조), 보건복지기본법(제10조), 제11조, 의료법(제9조) ○ 다른 모든 치료기관이 불가능한 경우 하므로 사전에 유선환연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관내 협회상장 또는 지방에 중개하는 치료기관을 사전에 확인하고 특별히 하는 등치 대비 필요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 병문잔교, 치료, 시험응시(일자리), 임종, 장례 등 필요할 경우 적용 ○ 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우선 연락하도록 격리대상자에게 안내 ○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질(구급차, 경찰)으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 시 • 자가격리 종료 전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치료에 예정된 경우 ○ 병문잔교, 치료 등이 예정된 경우 적용 ○ 치료 전일 코로나19 진단결과 시험 후 음성 확인 후 요원통치하면서 치료 실시 ○ 자가격리 대상자 치료/진료에 위해 의술 시 대상자에게 마스크 등을 착용시킨 후, 의술 직전 세면 등 증상부위를 확인하여 의술의 전(중) 과정을 통행	▶ 자가격리 중 시험응시(일자리), 임종, 장례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 ----- ----- ----- ----- ▶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적용	〈격리관리팀〉 임종, 장례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현행 내용 유지 및 간결화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1	다. 자가격리 해제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라. ----- ○ (-----) ----- -----12~13----- ----- -----	〈격리관리팀〉 관할 지자체 검사 인력 등 종합적인 여건에 따른 검사 지연을 고려하여 검사일 수정
51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을 제1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통칭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친오빠) ⑤ 만 65세 이상 ⑥ 교통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입국자 등 * 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을 제1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통칭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친오빠) ⑤ 만 65세 이상 ⑥ 교통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자 등 * 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 별도 시 지자체에서 추가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격리관리팀〉 자구 수정 자가격리자 격리해제 후 확진 사례 다수 발생하여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확대 필요
52	라. 기타 사항 2)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 ○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제한적 허용 - (사유) 해당 지자체장이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 (임종·장례식) 등으로 승인한 경우 - (요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 공항 이동 시 사설구급차 등 이용 - (중도출국자 보고 및 통보 경로) 시·군·구 → 시·도 → 중대본 → 방대본 *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출국 상대국에 중도출국자 명단 통보	마. ----- 2) ----- ○ 자가격리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격리기간 중이라도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 ▶ (대상)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중 임종사자·분류학적 별도의 의료통치자가 중도출국 허용하는 사유 제한 ▶ (사유) 해당 지자체장이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으로 승인한 경우 ▶ (요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 공항 이동시 사설구급차 등 이용 ▶ (중도출국자 보고 및 통보 경로) 시·군·구 → 시·도 → 중대본 → 방대본 *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출국 상대국에 중도출국자 명단 통보	〈격리관리팀〉 적용 대상 명확화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3	5.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 지역사회 내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로 인한 추가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방역관은 시·군·구 단위로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참고하여 강화된 감시 시행 - 감시 우선순위(집단) 설정 - 감시 방법 (일제검사, 전수검사, 표본검사, 유증상자 감시 등) 결정 ※ (예) 감시 우선순위 설정 및 감시방법 결정 <table><tr><th>감시방법</th><th>상황</th></tr><tr><td>일제검사</td><td>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발문하거나 하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1) 노출일짜가 일거나, 2) 자취, 반백 노출 그리고 노출상황에 대한 직간접 평가 또는 접촉자 추적이 어려운 경우</td></tr><tr><td>전수검사</td><td>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발문하거나 하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일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고, 미발 전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td></tr><tr><td>표본검사</td><td>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모병형, 재거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돌로써 일부 시설/집단을 선형화한 검사</td></tr><tr><td>유증상자 감시</td><td>의료기관, 자취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특정발현 여부 감시 강화</td></tr></table>	감시방법	상황	일제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발문하거나 하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1) 노출일짜가 일거나, 2) 자취, 반백 노출 그리고 노출상황에 대한 직간접 평가 또는 접촉자 추적이 어려운 경우	전수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발문하거나 하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일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고, 미발 전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표본검사	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모병형, 재거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돌로써 일부 시설/집단을 선형화한 검사	유증상자 감시	의료기관, 자취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특정발현 여부 감시 강화	3-4. ----- 가. 기본원칙 ○ ----- ----- ----- ----- ▶ 감시 우선순위(집단) 설정 ▶ 감시 방법 (전수검사, 선제검사, 표본검사, 유증상자 감시 등) 결정 ▶ 감시 우선순위 설정 및 감시방법 결정(예시) <table><tr><th>감시방법</th><th>상황</th></tr><tr><td>전수검사</td><td>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발문하거나 하문 시설(집단) 또는 병목적으로 다수에게 노출시킴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설(집단)에서 특정유증자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일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 전부를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td></tr><tr><td>선제검사</td><td>지역 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거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지속되는 등 감염원 확인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집단 발생에 관한 의사소통 강화 및 의료기관 간에 의사소통 강화하는 집단(시설) 내에서는 의료기관(연속)에서 선제적 선형화한 검사</td></tr><tr><td>표본검사</td><td>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모병형, 재거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돌로써 일부 시설/집단을 선형화한 검사</td></tr><tr><td>유증상자 감시</td><td>의료기관, 자취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특정발현 여부 감시 강화</td></tr></table> ▶ 결과 모니터링, 관리보고 및 평가 후 지역사회 유행 감시 지속	감시방법	상황	전수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발문하거나 하문 시설(집단) 또는 병목적으로 다수에게 노출시킴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설(집단)에서 특정유증자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일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 전부를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제검사	지역 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거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지속되는 등 감염원 확인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집단 발생에 관한 의사소통 강화 및 의료기관 간에 의사소통 강화하는 집단(시설) 내에서는 의료기관(연속)에서 선제적 선형화한 검사	표본검사	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모병형, 재거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돌로써 일부 시설/집단을 선형화한 검사	유증상자 감시	의료기관, 자취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특정발현 여부 감시 강화	〈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 일제검사와 전수검사를 전수검사로 통합 및 자구 수정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방법으로 선제검사 정의 및 조건 추가
감시방법	상황																						
일제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발문하거나 하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1) 노출일짜가 일거나, 2) 자취, 반백 노출 그리고 노출상황에 대한 직간접 평가 또는 접촉자 추적이 어려운 경우																						
전수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발문하거나 하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일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고, 미발 전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표본검사	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모병형, 재거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돌로써 일부 시설/집단을 선형화한 검사																						
유증상자 감시	의료기관, 자취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특정발현 여부 감시 강화																						
감시방법	상황																						
전수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발문하거나 하문 시설(집단) 또는 병목적으로 다수에게 노출시킴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설(집단)에서 특정유증자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일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 전부를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제검사	지역 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거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지속되는 등 감염원 확인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집단 발생에 관한 의사소통 강화 및 의료기관 간에 의사소통 강화하는 집단(시설) 내에서는 의료기관(연속)에서 선제적 선형화한 검사																						
표본검사	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모병형, 재거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돌로써 일부 시설/집단을 선형화한 검사																						
유증상자 감시	의료기관, 자취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특정발현 여부 감시 강화																						
53	○ 집단발생 사례 일제검사 - (시행방법) 집단발생 사례를 관리하는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 기간 내 특정 장소를 방문한 집단에 대한 일제검사 시행 시, 해당 관리대상이 속해있는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 내 관리 대상에 대한 일제검사 시행 * 최초 일제검사 시행 판단 지자체에서는 공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지자체에 정보 공유 (신설)	나. ----- 전수----- ○ (-----)----- ----- 전수----- ----- ----- 전수----- ▶ ----- ----- ▶ 이미 정책적으로 실시가 결정된 검사의 경우 질병관리청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실시 가능 (예: 어린이집 등 전국단위 실시 검사 등)	〈역학조사팀〉 일제검사와 전수검사 통합에 따른 용어 정리 〈법무지침팀〉 정책적 실시 결정된 검사의 경우 가능 사항 명시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4	(신설)	다. 지역사회 선제검사 ○ (시행방법) 지자체는 선제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센터와 사전 협의하고 계획서를 포함하여 권역센터에 공문으로 신청함. 권역센터는 해당 지역 시설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검사 실시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평가 후 결과를 화산탐(접수 후 24시간 이내). 지자체는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선제검사 시행 ▶ 권역센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우선으로 선(先) 안내 후, 공문 실시 가능 ○ (비용주체) 전액 국비지원 ▶ 이미 정책적으로 실시가 결정된 검사의 경우 질병관리청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실시 가능 (예: 어린이집 등 전국단위 실시 검사, 고위험집단시설(종사자, 이용자) 주기적 검사 등) ○ (실적보고) 지자체(시·군·구)는 검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검사 실적을 검사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검사 종료 후(3~7일 이내), 선제검사 결과서를 관할 권역센터로 제출. 검사비 청구시 당월 검사 건에 대하여 익월 첫째 주까지 검사 관리대장, 검사 실적 보고를 질병청으로 제출  관련서식 [서식 24] 선제검사 계획서 [서식 25] 선제검사 결과서 (제출기한 : 검사 종료 후 3~7일 내)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제출기한 : 익월 첫째 주 이내)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제출기한 : 익월 첫째 주 이내)	〈진단검사운영팀〉 집단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감시방법으로 선제 검사 시행방법 및 구체적인 절차 기술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5	6. 역학조사 정보관리 ○ 역학조사 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기초역학조사서</th><th>심층역학조사서</th><th>집단사례조사서</th></tr> <tr> <td>작성</td><td>시·군·구 보건소</td><td>시·도 / 보건소 / 시·도</td><td>시·도</td></tr> <tr> <td>등록</td><td>시·도</td><td>시·도</td><td>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td></tr> <tr> <td>관리(활용 등)</td><td>—</td><td>시·도</td><td>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td></tr> <tr> <td>평가/보류/지원</td><td>—</td><td>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td><td>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td></tr> </table>	구분	기초역학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시·군·구 보건소	시·도 / 보건소 / 시·도	시·도	등록	시·도	시·도	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관리(활용 등)	—	시·도	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평가/보류/지원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3-5. ----- 나. -----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기초역학조사서</th><th>심층역학조사서</th><th>집단사례조사서</th></tr> <tr> <td>작성</td><td>시·군·구 보건소</td><td>시·군·구 보건소 / 시·도</td><td>시·군·구 보건소 / 시·도</td></tr> <tr> <td>등록</td><td>시·도</td><td>시·도</td><td>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td></tr> <tr> <td>관리(활용 등)</td><td>—</td><td>시·도</td><td>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td></tr> <tr> <td>평가/보류/지원</td><td>—</td><td>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td><td>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td></tr> </table>	구분	기초역학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시·도	시·군·구 보건소 / 시·도	등록	시·도	시·도	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관리(활용 등)	—	시·도	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평가/보류/지원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주체 명확화를 위한 집단사례 조사서 작성 및 등록 관련 시·군·구 보건소 추가
구분	기초역학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시·군·구 보건소	시·도 / 보건소 / 시·도	시·도																																								
등록	시·도	시·도	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관리(활용 등)	—	시·도	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평가/보류/지원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구분	기초역학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시·도	시·군·구 보건소 / 시·도																																								
등록	시·도	시·도	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관리(활용 등)	—	시·도	시·도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평가/보류/지원	—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55	- 집단사례조사서는 집단사례를 인지한 보건소에서 집단사례 조사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첨부(해당 집단사례의 지표환자 부분에 첨부)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역학조사-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대상자 클릭’ 후 파일첨부 *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시 심층 및 집단사례조사서 파일로 첨부 * 사망, 중증합병증, 비전형적인 사례 등은 시·도 역학조사반이 임상경과, 주치의 의견, 사망원인판단, 역학조사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는 관할 지자체의 기초역학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가 기한 내 입력 및 첨부가 완료되도록 관리 (신설)	○ (집단사례조사서) -----보건소 및 시·도----- ----- ----- ▶ ----- ----- ▶ ----- ----- ▶ ----- ----- ▶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는----- ----- ▶ 보건소 및 시·도는 주기적으로 미등록 역학조사서 확인 및 등록을 해야 함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및 지자체 업무 명시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6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3)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시 조치 ○ (발생 보고)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는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발생 즉시 신고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재검출을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PCR 재검출 사례는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는 하지 않음 ▶ 수정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259(2021.4.12.)호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재검출 사례 발생 시 보고 ○ (-----) ----- ----- ----- 보고 ▶ ----- ----- ▶ ----- ---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56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조사 - (조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시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 실시 후 사례조사서 작성 - (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자 사례조사서'를 통해 시·도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메뉴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의학조사 → 제1급감염병관리 → 신증상감염병등록 →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 재검출자 이름은 검색하여 입력, 항목 작성, 접촉자 모니터링 결과 입력 • 검색이 안 될 경우 직접 입력	나. ----- ○ (사례조사) ----- ----- 사례 조사서 --- ○ (결과보고) ----- 사례 조사서--- ----- ▶ 결과보고 방법 - 메뉴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의학조사 → 재검출 사례 조사서 - 재검출 사례의 현황을 검색하여 입력, 항목 작성, 접촉자 모니터링 결과 입력 → 검색이 안 될 경우 기존역학조사서 입력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입력 - 재검출 사례 등록 입력의 경우 재검출 사례 조사서 → 환자관리 → 조회 → 조회된 사례조사서 → 재검출 사례 등록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에 대한 통계 산출 및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7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및 접촉자 관리 - (재검출자) 격리 등 별도조치 없음 - (접촉자) 격리 조치 없으며, 동거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해 보건교육 실시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	다. ----- ○ (관리조치) 재검출자 및 접촉자 격리 조치 없음 ▶ 밀접접촉자 : 재검출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57	(신설)	라. 재검출 특이사례 관리 ○ (사례조사) 격리해제 후 사례분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에 대해 심층조사 시행(지자체) ▶ 사례분류 조건 : 새로운 임상증상 발생 또는 다른 확진자 노출력 또는 최초 확진 이후 90일 경과 ○ (사례검토) 임상증상, 역학적 연관성,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례 검토 후 질병관리청 보고 및 필요시 선 격리 조치(지자체, 권역센터) ○ (사례판단) 질병관리청 내 관련 부서 간 심층 검토를 통한 최종적으로 사례 판단 ▶ 최초 확진과 연관되지 않은 재검출 : 재검염 확진사례(실험실적, 역학적, 임상적 근거 확인 시), 재검염 추정사례(실험실적, 역학적, 임상적 근거 불충분 시) ▶ 최초 확진과 연관된 재검출 : 격리해제 부적정으로 인한 재검출 사례, 면역저하에서의 재검출 사례 등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발생이 지속 보고되며, 특히 별도의 관리조치 요구되는 특이사례 보고가 증가되어 재검출 특이사례 관리방안 필요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신설)		▶ 재검출 특이사례 대응 흐름도 <table><thead><tr><th></th><th>재발사항</th><th>후결</th></tr></thead><tbody><tr><td>1 사례 보고</td><td>→ 2021.12.28 환자분과사서로 재검출 보고</td><td>재발 확인 가능</td></tr><tr><td>2 사례 분석</td><td>→ 재발원처 리포트서치 확인 → 재발 내역에 해당할 경우 담당주사 상담 [환자확대 목적] → 재발로 입원중인 방문자는 → 기존 확진자 노출력 재차 → 환자 확진 이후 30일 이내</td><td>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td></tr><tr><td>3 발생 조사</td><td>→ 발생 내역에 사서로 조사 → 1. 환자/가족에게 후 감염을 알리기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td><td>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td></tr><tr><td>4 사례 검토</td><td>→ 재발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재발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td><td>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td></tr><tr><td>5 발생 검토</td><td>→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td><td>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td></tr><tr><td>6. 발생 검토</td><td>→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td><td>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td></tr><tr><td>7. 발생 검토</td><td>→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td><td>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td></tr><tr><td>8. 발생 검토</td><td>→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td><td>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td></tr><tr><td>9. 발생 검토</td><td>→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td><td>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td></tr><tr><td>10. 발생 검토</td><td>→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td><td>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td></tr></tbody></table>		재발사항	후결	1 사례 보고	→ 2021.12.28 환자분과사서로 재검출 보고	재발 확인 가능	2 사례 분석	→ 재발원처 리포트서치 확인 → 재발 내역에 해당할 경우 담당주사 상담 [환자확대 목적] → 재발로 입원중인 방문자는 → 기존 확진자 노출력 재차 → 환자 확진 이후 3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3 발생 조사	→ 발생 내역에 사서로 조사 → 1. 환자/가족에게 후 감염을 알리기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4 사례 검토	→ 재발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재발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5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6.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7.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8.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9.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10.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환자관리팀〉 재검출 특이사례 대응 흐름도 추가
	재발사항	후결																																		
1 사례 보고	→ 2021.12.28 환자분과사서로 재검출 보고	재발 확인 가능																																		
2 사례 분석	→ 재발원처 리포트서치 확인 → 재발 내역에 해당할 경우 담당주사 상담 [환자확대 목적] → 재발로 입원중인 방문자는 → 기존 확진자 노출력 재차 → 환자 확진 이후 3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3 발생 조사	→ 발생 내역에 사서로 조사 → 1. 환자/가족에게 후 감염을 알리기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4 사례 검토	→ 재발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재발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5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6.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7.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8.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9.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10. 발생 검토	→ 발생 사례 검토 담당자(담당자)가 논의 → 발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담당자)가 → 1.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2. 환자/가족에게 재발로 인한 감염의 경우 → 3.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 4. 환자/가족에게 10일 이내	재발 확인/담당자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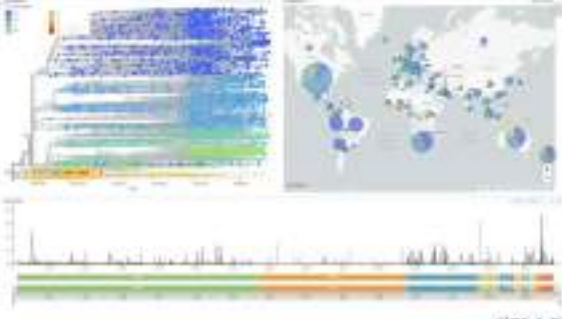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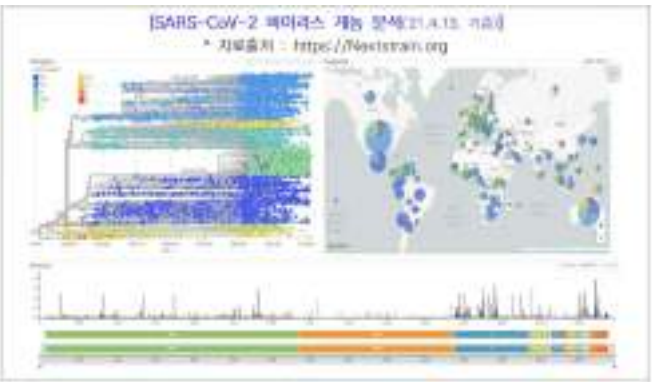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9	(신설)	5.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 (적용대상) 해외유입 확진자 및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환자 ○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 강화)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 격리가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 동실 사용이 가능 ▶ 아래의 경우에는 동실(同室) 사용이 가능함 ① 공동 노출자(함께 입국한 가족 등)의 경우 ② 동일 변이주(영국, 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경우 - 특히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의료 기관 또는 시설(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치료를 원칙으로 함 ▶ 환자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강화된 환자관리 방안 지속 하에 자가 치료 가능(단, 자가치료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검사기반 격리해제) 아래의 적용대상의 경우 검사기반 격리 해제 기준만 적용 ▶ 적용대상 ①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환자 ②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유행국가▶ 유입 코로나19 확진환자 ③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사람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 해외유입 상황평가를 통하여 월별 유행국가를 선정 후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영국 변이 또는 변이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비변이 감염자와 동일한 격리 해제 기준 적용	〈환자관리팀〉 변이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으로 국내 유입 증가와 지역사회 전파 사례 발생되고 있어 변이바이러스 환자 관리강화 조치필요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60	9.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삭제)	〈환자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												
Ⅵ. 대응방안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61	1. 개요 가. 대상자 모니터링	1. --- 가.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법무지침팀〉 대상자의 명확화												
66 ~ 67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가. 선별진료소 1) 선별진료소 접수 <table><tr><th>구분</th><th>사예 권역</th></tr><tr><td>의사환자</td><td>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td></tr><tr><td>조사 대상 유증상자</td><td>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td></tr></table>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즉각적 검사 권고 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가족(동거인) 또는 동업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구분	사예 권역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3. ----- 가. ----- 이용절차 1) --- <table><tr><th>구분</th><th>사예 권역</th></tr><tr><td>의사환자</td><td>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td></tr><tr><td>조사 대상 유증상자</td><td>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td></tr></table>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즉각적 검사 권고 PCR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업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구분	사예 권역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진단총괄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 관련하여 자가검사 관련 대응 추가
구분	사예 권역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구분	사예 권역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68	4) 대응 절차 ○ 소독 및 환기 (신설)	4) 상황별 ----- ○ (소독 및 환기) - 자가검사 양성자가 가지고 온 자가검사에 사용된 물품 수거 후 안전하게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자가검사 안내」 참조	〈진단총괄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자가검사 안내」 참조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Ⅶ. 사망자 관리			
71	3. 범위 및 역할 ○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의료기관,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 총괄 및 상황 유지 (044-202-3471~3474, 3481) - (장사지원센터/1577-4129)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 (신설)	3. 범위 및 역할 ○ (---)-----, 중앙방역대책본부, 장사지원센터 -- ----- --- - (-----) 장사지원 관련 방역대책본부 협업체계 유지 - (-----)----- ----- (1577-4129) - (중앙방역대책본부) 장례지침 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	〈환자관리팀/중수본 장례지원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할 추가
71	- (의료기관)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신처리	-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 --)------	〈환자관리팀〉 중앙방역대책본부 추가
72	4. 단계별 조치사항 (신설)	4. ----- 가. 평상시 업무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를 통해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환자관리팀〉 평상시 업무 신설
72	가. 임종 임박 ○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전파 및 장사지원 준비 -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 지자체가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나. --- 준비 ○ ----- -----	〈환자관리팀〉 신설 항목에 따른 순서 및 명칭 변경 〈중수본 장례지원팀〉 방대본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제2판 (2021.2.23.) 내용 반영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72	나. 사망 (신설) ○ (의료기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감염병환자 사망신고, 유가족에게 사망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협의	다. --- ○ (필수사항)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족과 고인의 마지막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애도시간▶ 보장 ▶ 애도시간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보건소) 유족에게 先 화장 後 장례 권고 안내 ○ (-----) ----- ----- -----	〈환자관리팀〉 코로나19사망자 애도시간 부족 민원에 따라, 충분한 애도시간 보장 안내
Ⅷ. 실험실 검사 관리			
75	1. 검체 채취 나. 검체종류 및 포장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을 채취하여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 의뢰서(서식 18)와 함께 수송 (신설)	1. ----- 나. ----- 1) 검체종류 ○ (-----) ----- ----- ----- ▶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 영아 등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	〈진단총괄팀〉 검체채취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검체의 우선순위 적용
81	5.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다. (질병대응센터)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로 결과 통보 (신설)	5. ----- 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로 결과 통보 ▶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로 당일 보고	〈진단총괄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9-4판, '21.2.24.개정) 내용과 통일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Ⅸ. 환경관리(소독·환기)																																																																									
83	전체	(삭제)	〈법무지침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등 참조																																																																						
Ⅺ. 질병개요																																																																									
89	2. 발생 현황 가. 국외 ○ '19.12.31~'20.1.3 중국에서 원인 미상 폐렴 환자 44명 보고 ○ '20.1.7 중국 보건부에서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 '20.1.11~12 중국 보건부에서 우한시 화난 수산물 시장 노출력 보고 ○ '20.1.13~ 타 국가*에서 해외유입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확인 * 태국(1.13), 일본(1.15), 한국(1.20) ○ '20.1.30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 '20.3.11 WHO 세계적 대유행 “판데믹” 선언 ○ '21.1.19. 223개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94,124,612명 발생, 2,034,527명 사망	2. ----- 가. ----- ○ ----- ○ ----- ○ ----- ○ ----- 각 국가▶ ----- ▶ ----- ○ ----- ○ ----- ○ '21.5.9. 각 국가지역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1,206,243,409건 실시 ○ '21.5.10. 각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157,973,438명 발생 3,288,455명 사망	〈법무지침팀〉 현황 업데이트																																																																						
89	출처: WHO Dashboard(1.7.) <table><tr><th>구분</th><th>7월 내 신규 발생현황</th><th>누적 발생현황</th><th>7월 내 신규 사망현황</th><th>누적 사망현황</th></tr><tr><td>미국</td><td>3,407,517</td><td>41,310,490</td><td>43,364</td><td>834,542</td></tr><tr><td>유럽</td><td>1,716,353</td><td>36,309,920</td><td>37,898</td><td>486,117</td></tr><tr><td>동남아시아</td><td>904,634</td><td>12,462,888</td><td>3,410</td><td>191,195</td></tr><tr><td>북미대륙 일부</td><td>189,178</td><td>6,529,272</td><td>2,648</td><td>137,317</td></tr><tr><td>아프리카</td><td>177,532</td><td>2,313,119</td><td>3,000</td><td>33,925</td></tr><tr><td>서태평양</td><td>81,775</td><td>1,365,818</td><td>1,194</td><td>33,344</td></tr></table>	구분	7월 내 신규 발생현황	누적 발생현황	7월 내 신규 사망현황	누적 사망현황	미국	3,407,517	41,310,490	43,364	834,542	유럽	1,716,353	36,309,920	37,898	486,117	동남아시아	904,634	12,462,888	3,410	191,195	북미대륙 일부	189,178	6,529,272	2,648	137,317	아프리카	177,532	2,313,119	3,000	33,925	서태평양	81,775	1,365,818	1,194	33,344	출처: WHO Dashboard(21.5.10.) <table><tr><th>구분</th><th>7월 내 신규 발생현황</th><th>누적 발생현황</th><th>7월 내 신규 사망현황</th><th>누적 사망현황</th></tr><tr><td>미국</td><td>3,213,006</td><td>63,677,532</td><td>30,000</td><td>1,596,180</td></tr><tr><td>유럽</td><td>900,670</td><td>52,914,444</td><td>18,273</td><td>1,105,636</td></tr><tr><td>동남아시아</td><td>2,877,800</td><td>35,038,567</td><td>29,394</td><td>313,304</td></tr><tr><td>북미대륙 일부</td><td>273,800</td><td>8,462,709</td><td>5,613</td><td>189,887</td></tr><tr><td>아프리카</td><td>40,963</td><td>3,322,371</td><td>909</td><td>83,970</td></tr><tr><td>서태평양</td><td>136,421</td><td>2,616,009</td><td>1,811</td><td>30,405</td></tr></table>	구분	7월 내 신규 발생현황	누적 발생현황	7월 내 신규 사망현황	누적 사망현황	미국	3,213,006	63,677,532	30,000	1,596,180	유럽	900,670	52,914,444	18,273	1,105,636	동남아시아	2,877,800	35,038,567	29,394	313,304	북미대륙 일부	273,800	8,462,709	5,613	189,887	아프리카	40,963	3,322,371	909	83,970	서태평양	136,421	2,616,009	1,811	30,405	〈법무지침팀〉 WHO Dashboard 업데이트
구분	7월 내 신규 발생현황	누적 발생현황	7월 내 신규 사망현황	누적 사망현황																																																																					
미국	3,407,517	41,310,490	43,364	834,542																																																																					
유럽	1,716,353	36,309,920	37,898	486,117																																																																					
동남아시아	904,634	12,462,888	3,410	191,195																																																																					
북미대륙 일부	189,178	6,529,272	2,648	137,317																																																																					
아프리카	177,532	2,313,119	3,000	33,925																																																																					
서태평양	81,775	1,365,818	1,194	33,344																																																																					
구분	7월 내 신규 발생현황	누적 발생현황	7월 내 신규 사망현황	누적 사망현황																																																																					
미국	3,213,006	63,677,532	30,000	1,596,180																																																																					
유럽	900,670	52,914,444	18,273	1,105,636																																																																					
동남아시아	2,877,800	35,038,567	29,394	313,304																																																																					
북미대륙 일부	273,800	8,462,709	5,613	189,887																																																																					
아프리카	40,963	3,322,371	909	83,970																																																																					
서태평양	136,421	2,616,009	1,811	30,405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90			〈법무지침팀〉 WHO GIS 현황 업데이트 확진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
90	나. 국내 ○ '21.1.20. 총 73,518명 발생, 1,300명 사망	나. --- ○ '21.5.11. 총 128,283명 발생, 1,879명 사망	〈법무지침팀〉 국내 현황 업데이트
91	3. 병원체 및 병원소 가. 병원체 ○ 현재 396,837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보유(1.20. 기준, GISAID) * 1개('19.12.24.) → 339개('20.1.31.) → 1,567개('20.4.30.) → 396,837개('21.1.20.)  ('21.1.30. 기준) <SARS-CoV-2 바이러스 게놈 분석> = 자료출처 : https://gisaid.org	3. ----- 가. ----- ○ --- 1,011,071개 -----(5.4. - -----) ▶ ----- ----- 396,837개('21.1.20.) → 1,011,071개('21.5.4.) 	〈법무지침팀〉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업데이트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94	※ 참고 :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 중 공기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 (본 자료는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집단사례명</th><th>발생인원</th><th>위험요인</th></tr> </thead> <tbody> <tr> <td>실내 운동 시설</td><td>서울 00탁구장 관련</td><td>42</td><td>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td></tr> <tr> <td></td><td>강원 00체육시설 관련</td><td>72</td><td>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td></tr> <tr> <td></td><td>충남 00댄스 관련</td><td>116</td><td>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td></tr> <tr> <td>노래방</td><td>인천 00노래방 관련</td><td>6</td><td>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td></tr> <tr> <td>주점</td><td>경북 00주점 관련</td><td>13</td><td>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td></tr> <tr> <td>커피숍</td><td>경기 00커피숍 관련</td><td>71</td><td>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td></tr> </tbody> </table>	구분	집단사례명	발생인원	위험요인	실내 운동 시설	서울 00탁구장 관련	42	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		강원 00체육시설 관련	72	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충남 00댄스 관련	116	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노래방	인천 00노래방 관련	6	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	주점	경북 00주점 관련	13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	커피숍	경기 00커피숍 관련	71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	▶ ----- 밀폐된 공간에서의 주요 집단사례 * ----- 변동 가능하며, 확진자 수는 가족, 지인 등 추가전파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집단사례명</th><th>발생인원</th><th>위험요인</th></tr> </thead> <tbody> <tr> <td>실내 운동 시설</td><td>서울 00탁구장 관련</td><td>42</td><td>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td></tr> <tr> <td></td><td>강원 00체육시설 관련</td><td>72</td><td>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td></tr> <tr> <td></td><td>충남 00댄스 관련</td><td>116</td><td>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td></tr> <tr> <td>노래방</td><td>인천 00노래방 관련</td><td>6</td><td>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td></tr> <tr> <td>주점</td><td>경북 00주점 관련</td><td>23</td><td>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td></tr> <tr> <td>커피숍</td><td>경기 00커피숍 관련</td><td>71</td><td>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td></tr> </tbody> </table>	구분	집단사례명	발생인원	위험요인	실내 운동 시설	서울 00탁구장 관련	42	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		강원 00체육시설 관련	72	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충남 00댄스 관련	116	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노래방	인천 00노래방 관련	6	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	주점	경북 00주점 관련	23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	커피숍	경기 00커피숍 관련	71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	〈역학조사팀〉 공기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명확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으로 표현 변경
구분	집단사례명	발생인원	위험요인																																																								
실내 운동 시설	서울 00탁구장 관련	42	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																																																								
	강원 00체육시설 관련	72	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충남 00댄스 관련	116	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노래방	인천 00노래방 관련	6	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																																																								
주점	경북 00주점 관련	13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																																																								
커피숍	경기 00커피숍 관련	71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																																																								
구분	집단사례명	발생인원	위험요인																																																								
실내 운동 시설	서울 00탁구장 관련	42	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																																																								
	강원 00체육시설 관련	72	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충남 00댄스 관련	116	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노래방	인천 00노래방 관련	6	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																																																								
주점	경북 00주점 관련	23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																																																								
커피숍	경기 00커피숍 관련	71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																																																								
98	마. 치명률 ○ 세계 치명률은 2.16% (WHO, 1. 20. 기준) ○ 우리나라는 1.77% (1. 20. 0시 기준) * (참고문헌) covid19.who.int, WHO, ncov.mohw.go.kr 보건복지부 (신설)	마. ----- ○ 전 세계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의해 0.1~25%로 다양함 ▶ ----- ▶ (참고문헌) JPA Ioannidis. Infection fatality rate of COVID-19 inferred from seroprevalence dat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법무지침팀〉 WHO 치명률에 대한 문헌 및 정보 업데이트																																																								
99	8. 예방 백신 ○ mRNA나 DNA를 이용한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및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등의 여러 백신들이 사용 및 개발(임상시험) 중	(삭제)	〈법무지침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참조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서 식			
103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범무지침팀〉 감염병정책총괄과 소관, 서식 현행화 ('20.9.11.)
105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범무지침팀〉 감염병정책총괄과 소관, 서식 현행화 ('20.9.11.)

[illegible]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20	〈서식 11〉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조사서	〈서식 11〉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에 1차 격리해제 기준 및 예방접종력 조사 항목 추가
127	〈서식 18〉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서식 18〉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법무지침팀〉 진단총괄팀 소관, 서식 현행화 ('20.9.11.)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29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대상자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문구 추가
130	(신설) 〈서식 20의2〉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환자관리팀〉 격리해제자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격리해제자 안내문 추가

[illegible]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36	(신설)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작성양식】 ☐ 선제검사팀 : 시도청 사업팀 ☐ 시도청 : 충청북도 검사 관리대장 기관 담당자 : 연락처 : <table><tr><th>구</th><th>시</th><th>시도청</th><th>시도청 사업팀</th><th>검사 담당</th><th>검사 대상</th><th>검사 방법</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r><tr><td>1</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r><tr><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검사비 국비 지원은 지자체가 부담한 검사 결과보고서 및 검사 결과보고서 검사 결과보고서 등 제출 가능하더라도 위 서식을 반드시 준수 <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 선제검사 후 검사 관리대장 양식 추가	구	시	시도청	시도청 사업팀	검사 담당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1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2																				3																				4																				
구	시	시도청	시도청 사업팀	검사 담당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1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2																																																																																																							
3																																																																																																							
4																																																																																																							
137	(신설)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작성양식】 ☐ 선제검사팀 : 시도청 사업팀 ☐ 시도청 : 충청북도 검사 실적보고 기관 담당자 : 연락처 : <table><tr><th>구</th><th>시</th><th>시도청</th><th>시도청 사업팀</th><th>검사 담당</th><th>검사 대상</th><th>검사 방법</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h>검사 일자</th><th>검사 결과</th></tr><tr><td>1</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d>충청북도</td></tr><tr><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현재 검사 실적보고 검사 관리대장(서식 26)과 검사자 수가 일치 해야 함 ** 검사자수는 검사 대상 인원(안전불 위험물)재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 선제검사 후 검사 실적보고 양식 추가	구	시	시도청	시도청 사업팀	검사 담당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1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2																				3																				4																				
구	시	시도청	시도청 사업팀	검사 담당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일자	검사 결과																																																																																				
1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2																																																																																																							
3																																																																																																							
4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부 록			
147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신설)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을 참조합니다(부록13).	○ -----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이용 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부록 13)-----	〈격리관리팀〉 자가격리 중 불가피한 외출 시 이동 수단 명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149	〈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을 참조합니다(부록13).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부록 13)-----	〈격리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illegible]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213	〈부록 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2조의2, '20.12.30 시행)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함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214	〈부록 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공개함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225	(신설) 〈부록 21〉 자가검사 대응 및 조치 방안		〈진단총괄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로 관련 부록 및 붙임 1(안내사항), 2(Q&A) 추가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230	〈부록 21〉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부록 22〉	〈진단총괄팀〉 부록 21 삽입에 따른 번호 수정
233	(신설) 〈부록 2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	〈부록 2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	〈환자관리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방안」 보고 건(‘21.2.10.) 관련 내용 추가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Q&A			
243	3.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3.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수본 선별진료지원팀〉 무료 검사 기관 구분 및 검사 안내 추가
244	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중수본 선별진료지원팀〉 무료 검사 기관 구분
257	7. 격리입원치료비	(삭제)	〈환자관리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
261	9. 청소 및 소독	(삭제)	〈법무지침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